



The World's Largest Open Access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Digital Library

This document is discoverable and free to researchers across the globe due to the work of AgEcon Search.

Help ensure our sustainability.

Give to AgEcon Search

AgEcon Search

<http://ageconsearch.umn.edu>

aesearch@umn.edu

*Papers downloaded from **AgEcon Search** may be us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and personal study only. No other use, including posting to another Internet site, is permitt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owner (not AgEcon Search), or as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Fair Use, U.S. Copyright Act, Title 17 U.S.C.*

No endorsement of AgEcon Search or its fundraising activities by the author(s) of the following work or their employer(s) is intended or implied.

WTO 농업협상 관세감축 방식 분석

최 세 군*

주제어: DDA 농업협상, 양허관세, 종가세, 비종가세, 종량세, 스위스 공식, 혼합 공식, UR 방식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tariff reduction by tariff reduction methods for 10 major countries. Six different tariff reduction methods have been applied to measure the tariff reduction rates. Tariff reduction rates from the method applied in the Uruguay Round are compared with outcomes from the other methods. A Swiss formula with a ceiling tariff rate 25% gives rise to the deepest cut. However, this formula brings shallow cut of tariffs compared with the Uruguay Round formula for some countries including the U.S., Australia and Chile. A Swiss formula with a ceiling tariff rate of 100% makes eight out of ten countries better off. A Swiss formula will be disastrous only for Korea and Japan. Therefore, possibility is high to accept formula tariff cut in DDA agriculture negotiations.

1. 머리말
2. 관세감축 공식
3. 자료

4. 분석결과
5. 맺음말

1. 머리말

선진국들은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결과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개발도상국들의 이행도 2004년이면 끝난다. WTO 회원

국들은 UR 협상결과 이행을 완료되는 것에 맞추어 새로운 시장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DDA 협상'은 2005년 1월을 협상타결 시한으로 정했으며, 농업분야 협상은 2003년 3월까지 협상의 세부 원칙이 확정될 예정이다. 농업협상의 시장개방 일정과 관련된 협상안은 곧 그 문책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은 국내보조보다는

* 연구위원

국경보호, 특히 관세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수입허가나 쿼터 등 비관세 장벽이 관세로 전환된 UR협상 이후, 관세의 시장보호 기능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국들은 관세를 감축하는 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수출국들은 관세를 큰 폭으로 낮춰 그들의 시장을 확보하고자 협상중이다. DDA 농업협상은 관세감축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다.

농산물 관세는 국가별로 부과방식과 세율 등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좁히자는 의미에서 이번 협상에 여러 가지 관세감축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관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높다. 반면 선진국들의 관세제도는 투명성이 낮다. EU 같은 경우 종가세 이외에 종량세, 복합세(종량세와 종가세를 함께 부과하는 방식), 계절관세, 최저 또는 최고 제한 관세 등 매우 복잡한 관세부과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불투명한 관세체계는 관세율이 높은 것 못지 않게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국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63.8%로 높은 편이다. 멕시코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43%이며, 중국, 태국, 칠레도 30%를 넘는다. 반면 호주와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각각 4%와 11%로 낮고, EU와 캐나다는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 차이를 좁히고 시장개방을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미국은 WTO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 공식회의(2002년 9월)를 앞두고 관세감축 방식으

로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을 제안하였다. 스위스 공식은 그 원리로 볼 때 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관세는 크게 감축되는 특징이 있으며, 여기에 관세율 상한을 제한하는 계수를 25%로 할 경우 관세율이 높은 회원국의 관세는 급격히 감축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관세율 차이가 줄어들고 시장개방은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제안은 너무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제안과 보다 현실적인 협상안을 포함하여 대표적인 관세감축 방식인 UR 방식, 스위스 공식, 혼합 공식, 일본 공식, EU 공식, 캐나다 공식 등 여섯 가지가 각각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용된 관세감축 공식은 현실적으로 WTO/DDA 농업협상에서 채택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도 모두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이 논문이 협상의 현실과 함께 이론적 측면도 모두 배려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일본 공식, 캐나다 공식, 미국 공식 등은 모두 WTO 농업협상의 장에서 국별 제안서나 검토용 자료를 통해 제시된 방식들이다.

연구범위로는 먼저 분석 대상국가를 10개국으로 한정하였다. 분석대상국가의 선정은 우리나라와의 통상관계, WTO 농업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각각 5개국씩으로 나누었다. 연구 대상국가는 개발도상국 가운데 한국, 중국, 칠레, 멕시코, 태국 등 5개국이 선정되었으며 선진국 가운데서는 일본,

미국, 캐나다, EU, 호주가 선정되었다. 분석대상 품목은 WTO 농업협상에서 농산물로 분류되는 HS 1류~24류(3류의 수산물 제외), 29류, 33류, 35류, 38류, 41류, 43류, 50~53류 등이다.

이 연구의 특징은 비종가세(종량세, 복합세, 선택세, 최고 또는 최저 관세 등)를 종가세로 전환하여 계산을 수행한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복잡한 비종가세를 부과하는 품목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관세감축에 대한 계산은 물론 관세율의 높낮이 등을 구분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비종가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은 수입가격을 품목별로 파악하여야 하고 품목의 가격이 HS 코드 별로 구분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종가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작업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 10개국의 농산물 관세체계를 분석하고 관세감축 방식별로 관세율 변화를 추정함에 있어서 비종가세를 종가세로 전환하여 모든 품목을 포괄한 것은 다른 어떤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은 의미 있는 부분이다.

2. 관세감축 공식

2.1. UR 방식

UR 농업협상에서 합의된 방식으로 모든 협상대상 품목의 평균 감축률과 품목별 최소 감축률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품목별로 신축성을 가지고 관세를 감축해 나가

는 것이다. 선진국의 감축률은 6년간 품목별 최저 15%, 평균 36%이며 개발도상국 감축률은 10년간 품목별 최저 10%, 평균 24%이다. 이 방식은 WTO 회원국들에게 품목별로 관세감축의 신축성을 부여해서 회원국들이 조기에 협상에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UR 농업협정에 근거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진국의 관세감축률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게 책정된다는 것도 의미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요 품목, 혹은 국제교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률이 매우 낮게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국들은 국가간 혹은 품목간에 관세율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수출국들은 이러한 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t_i = t_0(1 - UR_{cut}) + \text{subject to minimum}$$

여기서, t_i : 관세감축 이후의 관세율,

t_0 : 관세감축 이전의 기준세율,

minimum: 선진국 0.15, 개발도상국 0.1을 의미함.

2.2. 미국 방식

미국은 관세율이 5%를 초과하는 품목은 60%를 인하할 수 있게 한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의 규정에 근거해서 일률적인 60%의 관세인하를 원칙으로 하고, 관세가 낮은 일부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관세감축률을 나타내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미국방식에 의하면 관세율이 6.7%를 초과하는 품목은 60%의 감축효과를 나

타내고, 6.7% 이하인 품목의 경우에는 감축률이 50%~60%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높은 관세를 가지는 품목은 일률적으로 60%의 감축을 이행하자는 것이다.

$$t_0 > 6.7\% \text{인 경우, } t_1 = t_0(1 - 0.6)$$

$$t_0 \leq 6.7\% \text{인 경우,}$$

$$t_1 = t_0(1 - 0.5) - 1.5 \times \frac{t_0^2}{100}$$

2.3. 캐나다 방식

관세율이 5% 미만인 품목들의 관세는 0%로 하고, 관세율이 5% 이상이고 40% 이하인 품목의 관세는 50%를 감축하며, 40%보다 높은 관세 품목들은 감축 이후의 관세가 20%로 일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캐나다 방식에 따르면, 40%가 넘는 고율관세 품목과 40% 주위에 분포한 품목의 관세는 2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t_0 < 5\% \text{인 경우, } t_1 = 0$$

$$5 \leq t_0 \leq 40\% \text{인 경우, } t_1 = t_0(1 - 0.5)$$

$$t_0 > 40\% \text{인 경우, } t_1 = 20\%$$

2.4. 일본 방식

관세율이 5%보다 높을 때에는 70%의 관세감축률을 적용하고, 5% 이하인 품목에 대해서는 감축하지 않는 방식이다. 관세감축률 70%를 적용한 이후에 다시 3.5%를 더하여 관세율이 5%가 넘는 품목들이 감축 이후에 5% 이하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관세율이 5%보다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감축되지 않는 것과 형평성을 유지

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관세감축 방식을 단순화하고, 예외품목을 가급적 적게 두며, 관세율 격차를 축소하자는 의미의 방식이다.

$$t_0 > 5\% \text{인 경우,}$$

$$t_1 = t_0(1 - 0.7) + 3.5\%$$

$$t_0 \leq 5\% \text{인 경우, } t_1 = t_0$$

2.5. 스위스 방식

높은 관세율을 더욱 큰 폭으로 감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도쿄라운드(1973~79)에서 스위스가 제안한 방식인데, 낮은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의 대폭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b 는 주어진 값으로 관세율 상한을 나타내고, b 가 작을수록 감축률이 커진다. 도쿄 라운드 당시 공산품을 대상으로 한 스위스 공식에서 b 값은 14(미국, 스위스 등이 주장) 또는 16(EC, 호주 등이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관세율 상한은 대부분의 회원국이 중요한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세 자리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세율 상한을 이보다 높게 책정하여 비교하였다.

$$t_1 = \frac{b \times t_0}{b + t_0}$$

b 관세율 상한.

2.8. 혼합 방식(Cocktail Cut)

대폭적인 관세인하와 국가간 혹은 품목간 관세율 격차 해소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혼합감축 방식은 UR 방식과 같은 일률적인 선형감축과 스위스 공식에 의한 감축방식을 병용한 것이다. 스위스 공식에 의해 관세율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준의 높은 관세율은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 이하의 관세 수준에서는 낮은 수준의 관세감축이 적용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특정 관세수준 이하에서도 일률적 선형감축이 적용되도록 하고 고율관세는 스위스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 방식을 적용하는 절충안이다.

$$t_1 \leq \frac{a \times b}{1-a} \text{인 경우, } t_1 = t_0(1-a)$$

$$t_1 \geq \frac{a \times b}{1-a} \text{인 경우, } t_1 = \frac{b \times t_0}{b + t_0}$$

a : 일괄적인 관세를 감축을 나타내는 계수

b : 관세상한을 나타내는 계수

3. 자료

이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각국의 관세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비종가세 형태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관세율표를 계산이 가능한 종가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관세율 자료를 원자료로 이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국가별 양허관세는 AMAD (Agricultural Market Access Database, www.amad.org)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밖에 일부 자료는 국별 관세율표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취했다. 분석 대상 품목은 농업협상 대상인 국제표준 분류(HS) 1류~24류(3류의 수산물 제외), 29류, 33류, 35류, 38류, 41류, 43류, 50류~53류로 하였다.

총량세, 복합세, 계절관세, 최소 및 최고관세 등 비종가세율은 종가세로 변환하였다. 선택세의 경우는 종가세를 기준관세로 간주하였다. 종가세로의 변환은 총량세의 경우 해당 품목의 단위당 총량세를 해당 품목의 수입단가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계

표 1 주요 관세감축 방식

관세감축 방식	수 식
1. UR 방식	$t_1 = t_0(1 - UR \text{ cut}) + \text{subject to min. (UR cut 36\%, 24\%)}$
2. 미국 방식	If $t_0 > 6.7\%$ $t_1 = t_0(1 - 0.6)$, Else $t_1 = t_0(1 - 0.5) - 1.5 \times \frac{t_0^2}{100}$
3. 캐나다 방식	If $t_0 < 5\%$, $t_1 = 0$, If $t_0 > 40\%$, $t_1 = 20\%$, Else $t_1 = t_0(1 - 0.5)$
4. 일본 방식	If $t_0 > 5\%$, $t_1 = t_0(1 - 0.7) + 3.5\%$, Else $t_1 = t_0$
5. 스위스 방식	$t_1 = \frac{b \times t_0}{b + t_0}$, b = 관세를 상한(예, 25% or 100% or 200% 등)
6. 혼합 방식	If $t_0 \leq \frac{a \times b}{1-a}$, $t_1 = t_0(1 - a)$, Else $t_0 \geq \frac{a \times b}{1-a}$, $t_1 = \frac{b \times t_0}{b + t_0}$

절관세, 최고 및 최저 관세 등으로 나타난 비종가세는 높은 세율을 기준으로 종가세로 변환하였다. 따라서 수입가격의 정확성과 시차에 따라 변환된 종가세는 변동될 수 있다. 관세율 코드(HS 8단위 또는 10단위 등)와 실품목(HS 4단위 또는 6단위 등)과는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태국의 양허관세는 총 737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HS 7단위로 분류된 것이 107 품목, HS 6단위로 분류된 것이 629 품목, HS 4단위로 분류된 것이 1 품목(HS 코드 1514) 등이다. 멕시코의 양허관세는 모두 HS 8단위로 분류되었으며 95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멕시코의 관세부과 형태는 종가세로 단순하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HS 8단위로 관세를 양허하였으며, 863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중국의 관세율도 모두 종가세로 구성되어 있다. 칠레는 HS 8단위를 위주로 766개 품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칠레의 관세율은 모두 종가세 형태를 나타낸다. 한국이 양허한 농산물 품목은 HS 10단위로 모두 1,307개이다.

미국의 양허관세율표는 HS 8단위로 모두 1,723개 품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3개 품목의 자료는 AMAD에 누락된 상태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미국의 비종가관세는 2000년과 1999년 수입단가 및 AMAD에서 제공하는 국제가격(1999년, HS 6단위 기준)으로 종가세로 변환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양허관세는 HS 8단위로 모두 1,307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비종가세의 종가세 환산은 해당품목의 1999년 수입단가를

기준으로 변환하였다. 일부 1999년의 수입단가가 존재하지 않는 품목은 1995-1997년의 해당 수입단가를 이용하였다. 종가세로 변환시에 해당품목의 수입단가가 존재하지 않는 4개 품목은 부득이 제외하였다.

EU의 양허관세는 HS 8단위로 총 1,764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비종가관세는 2000년 수입단가 및 AMAD 제공 국제가격(1999년, HS 6단위)을 기준으로 종가세로 변환하였다. 2개 품목은 자료누락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계절관세, 최저 및 최고 관세 등은 관세율이 높은 쪽을 선택하였다. 호주는 HS 8단위로 총 799개 농산품이 양허되었다. 이 가운데 자료가 누락된 5개 품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비종가관세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1999년 수입단가를 이용하여 종가세로 변환하였다. 일본은 HS 10단위로 모두 1,304개 품목이 양허되었다. 비종가관세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일본의 수입단가 및 국제가격(1999년, HS 6단위)을 이용하여 종가세로 변환하였다.

4. 분석결과

4.1. 평균의 변화

이상의 자료와 분석방법을 가지고 관세율 감축이 가져온 농산물의 관세율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UR 방식의 경우 품목별로 최소 감축률만 지키면서 평균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커다란 신축성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연구에서는 품목별

감축률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UR 방식의 경우 모든 품목이 평균 감축률로 감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평균 관세 감축률은 개도국 24%, 선진국 36%를 적용하였다. 스위스 공식의 경우 미국의 제안을 스위스 공식1로 표시하였으며, 관세율 상한 100%와 200%를 각각 스위스 공식2와 스위스 공식3으로 표시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관세감축 방식은 모두 여덟 가지이다. 혼합 공식은 관세율 상한 100%, 일률적인 관세감축률은 선진국의 경우 36%, 개발도상국은 24%를 가정하였다. 국가별로 모든 농산물 세번(HS 코드)에 각각의 공식을 적용하여 관세감축률을 구하고 그 결과를 평균하였다.

여덟 가지 관세감축 방식 가운데 UR 방식보다 관세감축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관세율 상한을 200%로 하는 스위스 공식3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 공식3이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분석 대상 10개국 가운데 한국, 일본, 캐나다 3개국을 제외한 7개국이나 되었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하는 스위스 공식2를 적용할 경우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미국, 호주, 칠레 등 3개국이다. EU는 UR 관세감축 폭과 비슷한 감축률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스위스 공식3은 분석 대상국 가운데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하는 경우도 EU, 미국, 호주 등 협상력이 큰 국가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모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축방식으로는 미국 공식과 캐나다 공식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공식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60% 정도의 관세감축률을 나타냈다. 미국 공식이 6.7% 이상 되는 관세율은 일률적으로 60% 감축되도록 고안된 것이며, 6.7% 이하의 관세율도 50%~59% 사이의 감축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캐나다 공식은 50%~84%의 감축률을 나타내 미국 공식보다 급격한 관세감축률을 나타냈다. 특히 캐나다 공식은 캐나다의 관세감축률은 84%까지 확대시켜 캐나다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한 스위스 공식2와 혼합 방식은 관세가 높은 국가들에 있어서는 유사한 관세감축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관세가 낮은 국가들에 있어서는 혼합 방식이 스위스 공식보다 높은 관세감축률을 나타냈다. 혼합 방식이 낮은 관세율에 대해서도 선형감축을 나타내 스위스 공식보다 감축률이 크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 혼합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률은 스위스 공식2의 감축률에 비해 26% 포인트나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칠레, 미국, EU, 캐나다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두 가지 공식은 대부분의 국가에게 UR 방식보다 높은 관세 감축률을 나타내고 있다. 예외적인 국가가 있다면 스위스 공식2의 경우 호주, 미국, 칠레에게는 UR 방식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며, 혼합 방식은 칠레와 호주에게 UR 방식과 동일한 감축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 공식도 호주를 제외한 다른 분석대상 국가에게 UR 방식보다 불리하게 작용한다.

UR 방식보다 관세감축률이 매우 높아 회원국들의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방식은 미국 공식, 캐나다 공식,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 일본 공식, 관세율 상한 100%의 혼합 공식 등이다. 반면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UR 방식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스위스 공식³과 협상력이 큰 국가들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작용하는 스위스 공식²의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들은 많은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관세감축률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DDA협상에서 관세감축 방식을 UR 방식 이외의 것으로 선택한다면 스위스 공식을 이용하되 관세율 상한은 100% 이상으로 한 것이 가능성이 있다.

4.2. 국가별 변화

4.2.1. 한국

우리나라는 DDA 협상에서 관세감축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UR 방식과 같은 신축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관세감축 방식과 감축 폭에 있어서 UR 정도의 수준이면 성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관세감축폭을 36%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UR 방식과 다른 형태로 관세감축 방식이 결정된다고 하면 위에서 설명한 일곱 가지의 감축방식은 모두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관세율 상한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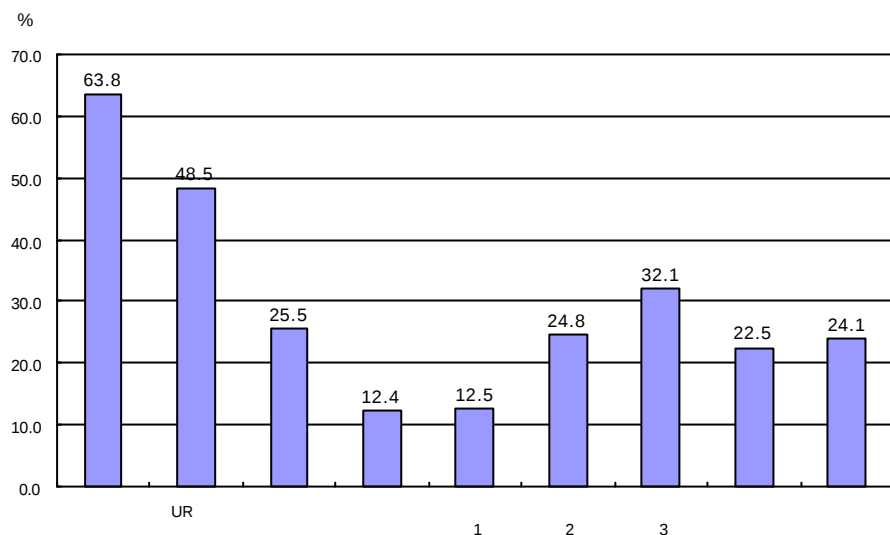
표 2 관세감축공식별 평균 양허관세율의 변화

단위: %

	평균 양허관세	UR 방식	미국 방식	캐나다 방식	스위스 방식 1	스위스 방식 2	스위스 방식 3	일본 방식	혼합 방식
한국	63.8	48.5 (24.0)	25.5 (60.0)	12.4 (80.6)	12.5 (80.4)	24.8 (61.1)	32.1 (49.7)	22.5 (64.7)	24.1 (62.3)
태국	35.4	26.9 (24.0)	14.2 (60.0)	15.3 (56.9)	13.7 (61.4)	24.7 (30.4)	28.8 (18.6)	14.1 (60.3)	24.3 (31.4)
멕시코	42.8	32.6 (24.0)	17.1 (60.0)	16.7 (61.0)	14.5 (66.1)	27.4 (36.0)	32.9 (23.3)	16.3 (61.9)	27.2 (36.6)
칠레	8.9	6.7 (24.0)	3.6 (59.4)	4.4 (50.0)	5.9 (33.9)	7.7 (13.0)	8.2 (7.2)	6.2 (30.7)	6.7 (24.0)
중국	37.9	28.8 (24.0)	15.1 (60.0)	16.4 (56.6)	13.9 (63.3)	25.8 (31.8)	30.5 (19.5)	14.7 (61.1)	25.5 (32.7)
미국	11.1	7.1 (36.0)	4.5 (59.6)	3.6 (67.6)	4.8 (57.0)	7.4 (33.3)	8.5 (23.2)	5.4 (51.4)	6.0 (45.9)
캐나다	21.3	13.6 (36.0)	8.5 (59.8)	3.4 (84.2)	4.6 (78.5)	9.0 (57.9)	11.9 (44.1)	8.2 (61.5)	8.0 (62.6)
EU	22.1	14.2 (36.0)	8.9 (59.9)	7.2 (67.3)	7.9 (64.3)	13.8 (37.5)	16.5 (25.4)	9.2 (58.3)	11.9 (46.0)
호주	4.0	2.6 (36.0)	1.7 (58.9)	1.8 (56.0)	2.9 (28.9)	3.6 (10.0)	3.8 (5.4)	2.8 (30.6)	2.6 (36.0)
일본	41.3	26.4 (36.0)	16.5 (59.9)	6.8 (83.5)	7.9 (80.9)	15.4 (62.7)	20.2 (51.0)	14.9 (63.8)	13.6 (67.0)

주: ()안은 감축률을 나타냄. 검게 표시된 부분은 UR 방식보다 유리하거나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냄.

그림 1 관세감축공식별 한국의 평균관세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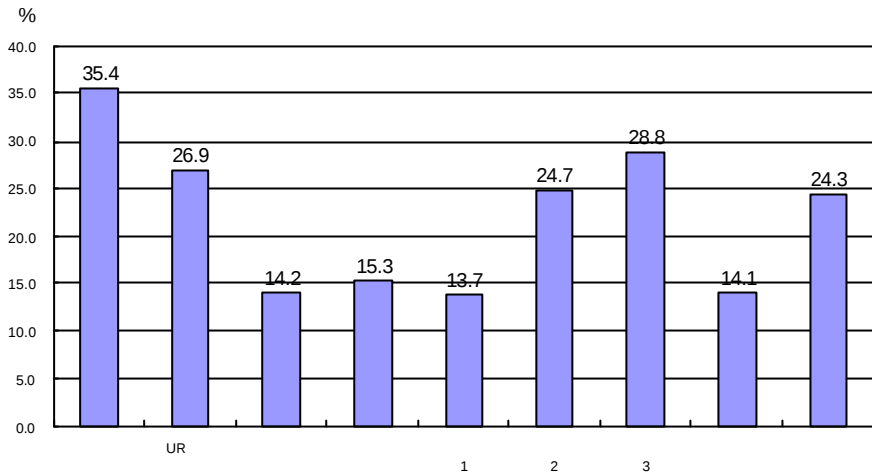
이 제안한 25%에 8배 수준인 200%로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관세감축폭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게 가장 불리한 관세감축 방식은 캐나다 방식과 관세율 상한을 25%로 한 스위스 공식1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80% 이상의 관세 감축률을 나타낸다. 미국공식을 이용한 관세 감축률은 60%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감축률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밖에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한 스위스 공식과 혼합 공식, 그리고 일본 공식은 모두 60% 수준의 비슷한 관세감축률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느 감축 공식을 사용하든 일본을 제외한 모든 분석 대상국가들보다 높은 관세감축률을 나타내 공식을 이용한 관세감축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4.2.2. 태국

태국은 케언즈 그룹 국가의 하나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매우 적극적이다. 스위스 공식3을 이용할 경우 태국의 관세 감축률은 18.6%로 UR 방식에 비해 오히려 낮다. 스위스 공식2와 혼합 공식을 이용한다고 해도 태국의 관세감축률은 30%에 불과하다. DDA 협상에서 UR 당시보다 관세 감축폭을 넓히고 감축 기간을 단축하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태국은 스위스 공식이나 혼합 공식을 이용할 경우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밖의 관세감축 공식은 60% 수준의 관세감축률을 나타내 태국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태국에게 가장 유리한 관세감축 방식은 스위스 공식3이고, 가장 불리한 방식은 스위스 공식1이다. 스위스 공식1의 관세감축률은

그림 2 관세감축공식별 태국의 평균관세를 변화



61.4%이다.

4.2.3. 멕시코

멕시코에게 가장 유리한 관세감축 방식은 스위스 공식3이다. 스위스 공식3의 관세 감축률은 23.3%로 UR 방식보다 유리하다. 관세율 상한을 100% 수준 이하로 낮출 경우 전반적으로 UR 방식보다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이 불리하다. 그러나 관세율 상한은 100%로 한 스위스 공식과 혼합 공식의 관세 감축률은 36% 정도로 UR 방식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 미국 공식, 캐나다 공식, 일본 공식,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1 등은 모두 60% 이상의 감축률을 나타내 UR 방식보다 불리하다.

그림 3 관세감축공식별 멕시코의 평균관세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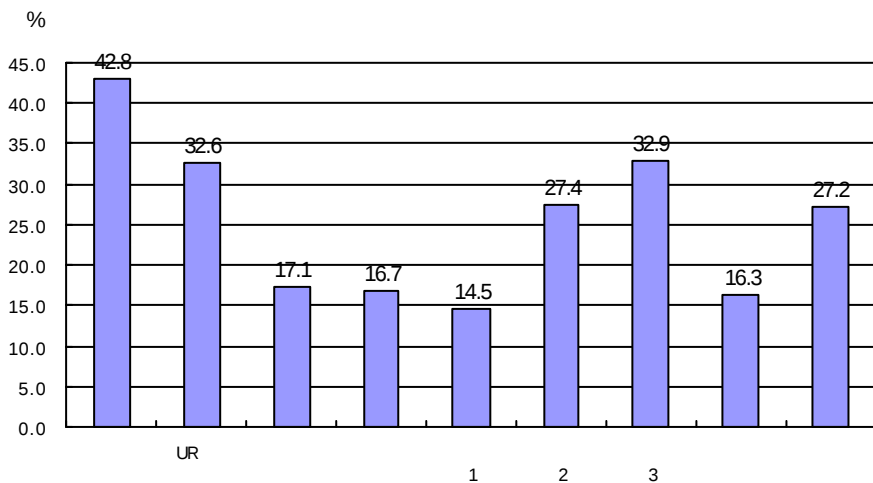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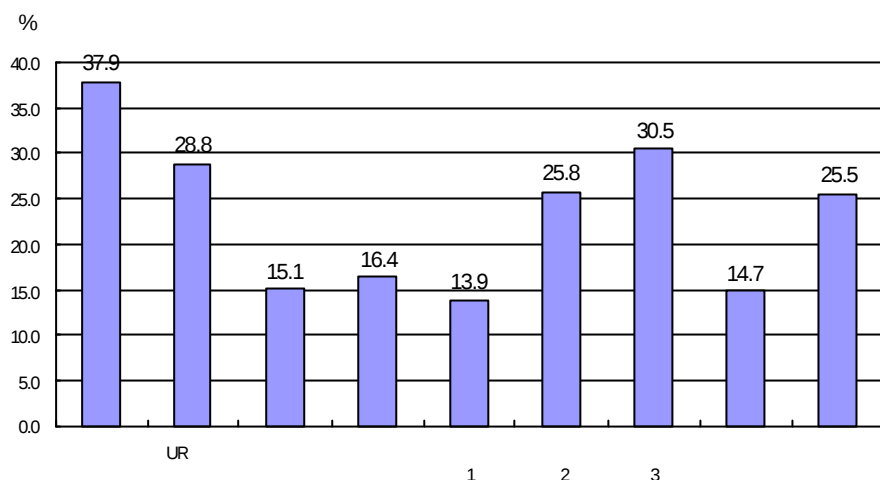


그림 4 관세감축공식별 중국의 평균관세를 변화



4.2.4. 중국

중국에게 가장 유리한 관세감축 방식은 스위스 공식3이다. 관세율 상한을 200%까지 허용할 경우 스위스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률은 19.5%로 UR 방식의 개발도상국 관세감축률 24%에 미치지 못한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제한할 경우인 스위스 공식2와 혼합 공식의 경우 중국의 관세감축률은 32% 수준으로 DDA 협상에서 UR 방식의 관세감축 방식을 선택하고 감축률을 인상할 경우 UR 방식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과 미국 공식, 일본 공식, 캐나다 공식은 모두 관세 감축률을 60% 정도로 확대하여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4.2.5. 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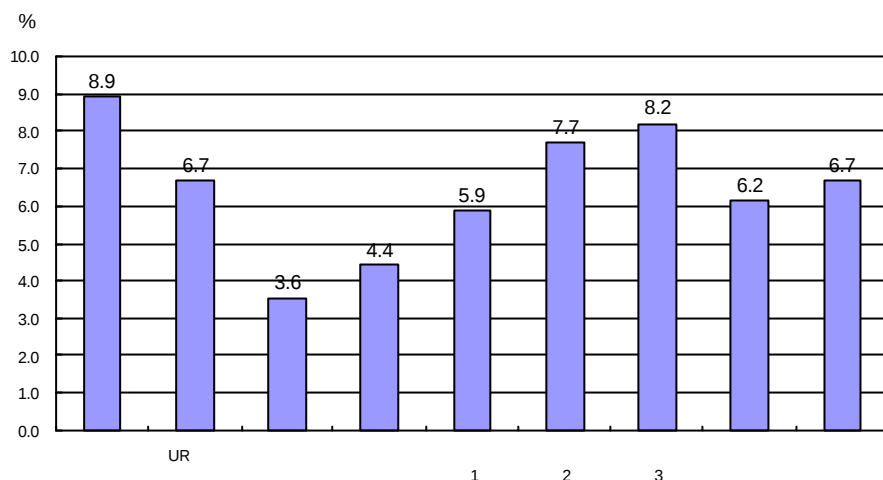
칠레의 평균 관세율은 8.9%로 낮은 편이

다. 관세감축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식에 의한 감축이 UR 방식보다 유리한 경우는 스위스 공식2와 3이다. 혼합 공식은 UR 방식과 동일한 관세감축률을 나타낸다. 칠레가 선택할 수 있는 관세감축 방식으로 가장 유리한 것은 스위스 공식3으로 관세감축률은 7.2%에 불과하다. 같은 조건이라면 혼합 공식이 스위스 공식보다 불리하다. 미국 공식과 캐나다 공식의 관세감축률은 각각 59.4%와 50%로 높은 편이다. 스위스 공식1과 일본 공식의 관세감축률은 30% 수준이다. 따라서 칠레는 공식에 의한 감축을 선택할 경우 미국 공식과 캐나다 공식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이나 선택할 수 있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4.2.6. 미국

관세율이 비교적 낮은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스위스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률이 이행할 경우 관세율 상한을 100% 이상으로

그림 5 관세감축공식별 칠레의 평균관세를 변화



하는 경우에만 UR 방식보다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혼합 공식은 스위스 공식에 비해 관세감축률이 높아져 45.9%의 감축률을 나타낸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동일하게 유지하여도 혼합 공식은 스위스 공식에 비해 12% 포인트 이상 감축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일본 공식의 관세감축률은 51.4%로

스위스 공식1, 캐나다 공식, 미국 공식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감축률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이 다른 나라의 시장개방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시장 개방폭 축소만을 고려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관세감축 방식은 관세율 상한을 100% 이상으로 한 스위스 공식이 가장 유리한 방식이다.

그림 6 관세감축공식별 미국의 평균관세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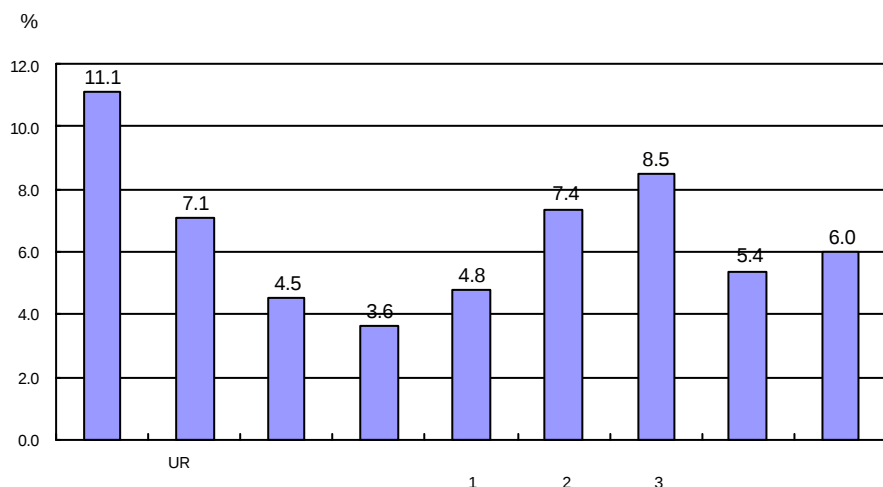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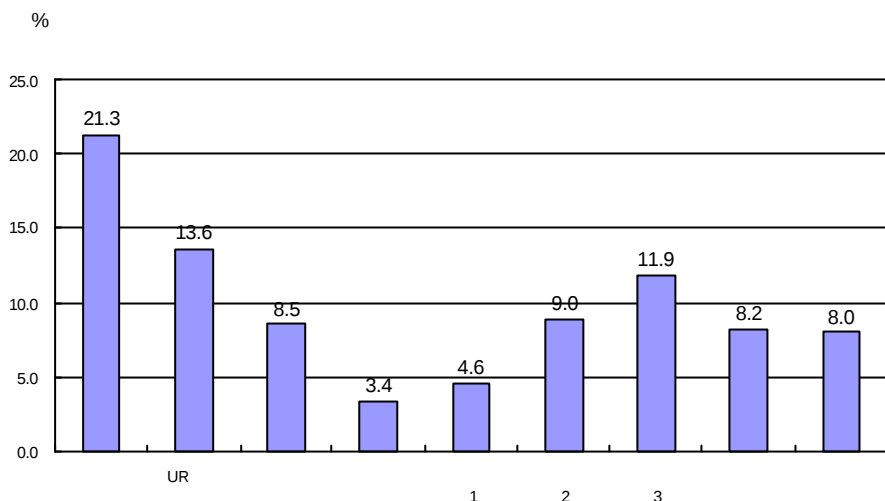


그림 7 관세감축공식별 캐나다의 평균관세를 변화



4.2.7. 캐나다

캐나다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이 UR 방식보다 불리하다. 캐나다는 케언즈 그룹 국가의 하나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자국의 관세율도 높은 나라이다. 따라서 관세율 상한을 200%로 한 스위스 공식3에 있어서도 평균 44%의 관세감축률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세감축률은 평균 관세율이 비슷한 EU에 비해 20% 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다. 그만큼 고율관세 품목이 많다는 것이며, 공식에 의한 감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캐나다의 100% 이상 고율관세 품목은 93개 품목으로 전체의 7.1%이며, 이것은 EU의 3.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캐나다에게 가장 불리한 관세감축 공식은 캐나다 공식으로 관세감축률은 84%에 이른다. 스위스 공식3을 제외한 다른 공식들도 관세감축률이 모두 60%를

넘어 캐나다가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4.2.8. 유럽연합

EU는 관세율 상한을 100% 이상으로 하는 스위스 공식은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 상한을 200%로 할 경우 스위스 공식은 UR 방식보다도 낮은 25.4%의 평균 감축률 부담밖에 없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할 경우에도 감축률은 37.5%에 불과하다. 그러나 동일한 관세율 상한을 가진다고 해도 혼합 공식보다는 스위스 공식이 EU에게 유리하다. 관세율 상한 100%의 혼합 공식은 46%의 관세감축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EU에게 가장 불리한 관세감축 방식은 캐나다 공식으로 관세 감축률은 67.3%이다.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 일본 공식, 미국 공식 등은 60% 정도의 관세감축률을 나타낸다.

그림 8 관세감축공식별 EU의 평균관세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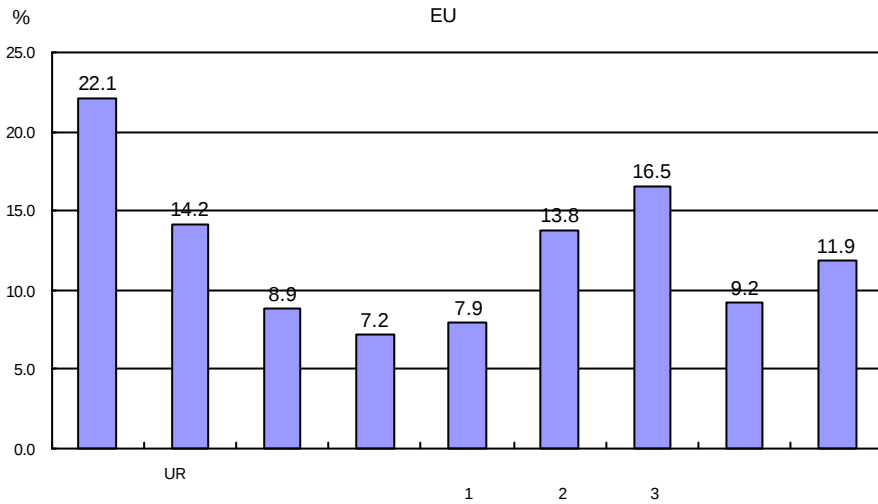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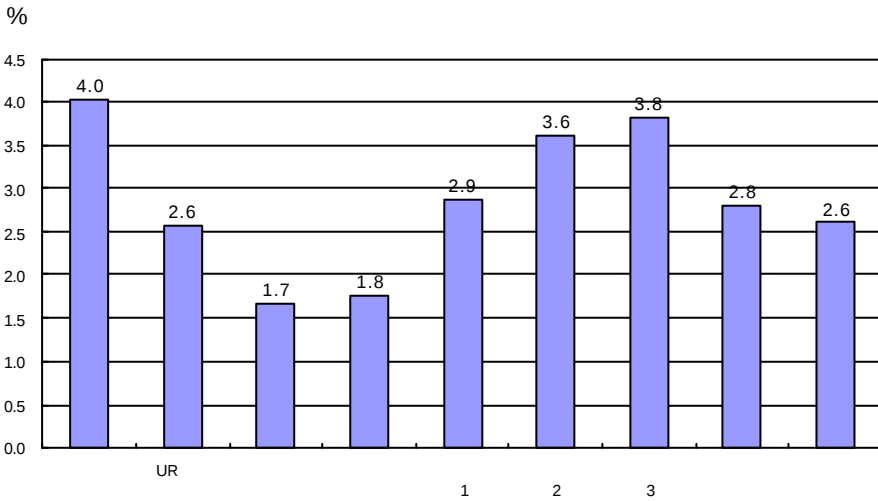


그림 9 관세감축공식별 호주의 평균관세를 변화



4.2.9. 호주

호주의 평균 관세율은 4%로 분석 대상국 가 가운데 가장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어느 방식으로 관세를 감축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것이다. 10% 이하의 관세를 적용 받는 품목이 전체의 87%에 달한다. 캐나다

공식과 미국 공식을 제외한 다른 공식은 UR 방식의 감축률 36%보다 낮은 관세 감축률을 나타낸다. 미국 공식의 관세 감축률은 58.9%, 캐나다 공식의 관세 감축률은 56%이다.

4.2.10.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DDA 협상에서

관세감축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UR 방식과 같은 신속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UR 방식과 다른 형태로 관세감축 방식이 결정 된다고 하면 위에서 설명한 일곱 가지의 공식에 의한 감축방식은 모두 일본에게 불리하다. 관세율 상한을 200%로 한다고 해도 일본의 관세감축폭은 51%에 달한다. 일본에게 가장 불리한 관세감축 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이 캐나다 방식과 관세율 상한을 25%로 한 스위스 공식¹⁾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80% 이상의 관세 감축률을 나타내며 우리나라보다 감축률이 높다. 미국 공식을 이용한 관세 감축률은 60%로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감축률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밖에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한 스위스 공식과 혼합 공식은 각각 62.7%와 67%의 감축률을 나타낸다. 일본도 혼합 공식이 스위스 공식보다 불리하나 큰 차이는 없다. 일본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률은 63.8%이다. 일본이 DDA 협상에서 받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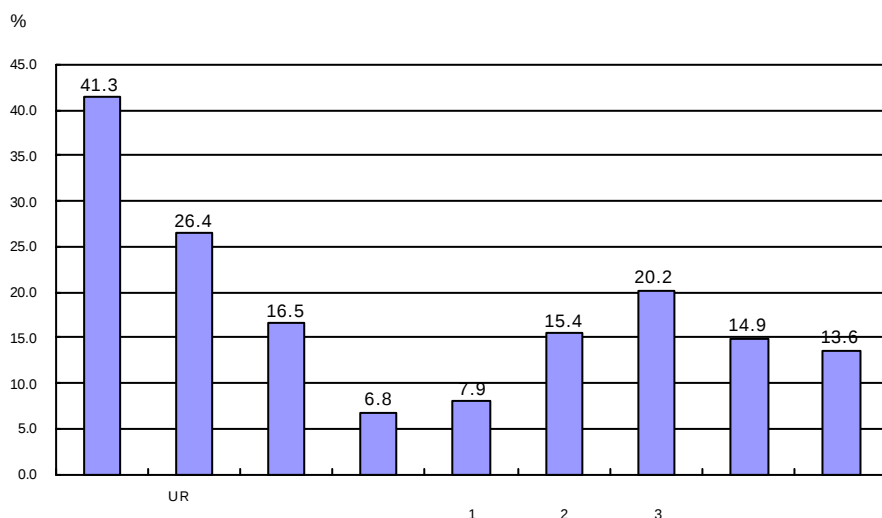
일 수 있는 관세감축 방식은 많지 않은 전망이다.

5. 맺음말

관세정책은 외국의 경쟁 상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산업정책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무역자유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간 무역 협상이나 양자간 무역 협상에서도 관세 협상은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WTO 농업협상 가운데 관세협상 분야에서는 관세감축의 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감축 폭을 어느 정도로 하는가와 어떠한 방식으로 감축을 이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감축 폭과 감축률의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WTO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여

그림 10 관세감축공식별 일본의 평균관세를 변화



러 가지 관세체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UR 협상에서 인정된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화 한데서 비롯된 고율관세 문제, 회원국간 및 품목간 관세격차 문제, 보호무역적 측면이 강한 누진관세 체계의 문제 등이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공식을 이용한 관세감축 방식의 경우 이용하는 계수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UR 방식보다 관세감축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공식에 의한 감축이 UR 방식보다 매우 불리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한 스위스 공식이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미국과 호주이며, 비슷한 나라는 EU, 캐나다, 태국, 중국, 멕시코, 칠레 등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율 상한을 100% 정도로 할 경우 스위스 공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어느 나라나 민감한 품목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율 상한을 100%로 제한하는 데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며,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신축적 관세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품목(전체의 X%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 상한에서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스위스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관세감축 방식의 선택은 자국의 감축률 최소화라는 요소 이외에도 수입국의 시장

개방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분석된 연구결과로 각국의 관세감축 방식 선호도를 결론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바와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 동향을 종합할 때 급진적인 관세감축 방식을 주장할 국가들이 많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농산물 수입시장을 겨냥하여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농림부, 2000, 「농림산물 품목분류」.
박상태, 1996, 「관세정책요론 : 관세의 이론과 실제」, 한국관세연구소.
송유철, 박지현, 1999, 「WTO 농산물협상의 관세 인하방식별 장단점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겨울호.
임정빈, 2000, B, 「차기 WTO 농산물 관세인하협상과 정책과제」, 「농업경제연구」, 제41집 제2권, 한국농업경제학회.
최세균, 어명근 등, 1998,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R3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2001,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와 관세감축 효과」, 「농촌경제」 2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1999, 12, Common Customs Tariff.
FAO, 2000,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on Agriculture, A Resource Manual」.
U.S.A, 200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